



대한민국법원 QR코드

서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등본입니다.

2025. 10. 20.

법원주사 박건배



사 건 2025고단1889 공갈, 협박

2025초기215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최슬아 (940703-), 회사원

주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39길 10, 302호(신길동)

등록기준지 정읍시 상동 708

검 사 장영룡(기소), 조민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최용희, 민준식

배상신청인 양○범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양○○(남, 33세)은 2023. 10.경부터 2024. 5.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홍○리와 교제하던 중 이를 숨기고 피고인과 교제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24. 5.경 홍○리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4. 7. 23. 22:08경부터 2024. 7. 24. 00:4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홍○리에게 연락해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서든 연락해서 사과하라고 해', '내가 보기에 저년은 나한테 사과 절대 안해ㅋㅋㅋ 그래서 난 신고할거야', '나땀에 지네아빠 경찰 조사 받으면 그때 느끼는게 있겠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홍○리 백퍼 탈세한거고 신고하면 알아서 조사할거래', '홍○리 탈세 맞대 개네 아빠도 같이 조사받을거라고 하더라', '나중에 아빠까지 경찰서 가서 벌금 처받아야 그때가서 무릎꿇을걸 후회하겠지', '부정수급 신고하던 내 추진력 개무시하네?', '홍○리한테 딱 전해 점심까지 연락 안하면 글렌비 탈세는 물론 그거 명의 돌려서 실업급여 처받았던것도 추가로 제보할거라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홍○리와 홍○리 아버지의 탈세 혐의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4. 7. 25. 12:20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리한테도 민사 걸으라고 알려줄거임ㅎㅎ 소장도 다 써주고ㅎㅎ', '홍○리 돈 못받을까봐 불안해하던데', '내가 여기서 소장 써주고 가압류 걸라고 다 깔'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먼 해놓을 듯', '넌 회사미고 너무 갑쳐 집유 나오게해서 꼭 잘리게 해야겠어', '이번에 성의 표시하면', '나도안괴롭힌다고', '각서씀', '○리 연락해서 민사걸라고 종용하거나 그딴거 안한다고 각서씀', '반클리프 목걸이 가지고 싶어 짝은거', 'ㅋㅋㅋ음 홍○리소장', '이미 다 써?고', '주지만 앓았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4. 7. 28. 02: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발 착각 좀 하지마 지금 니가 존나 빌어도 모자랄판이니까 나 너 안봐도 상관없고 너 그냥 고소하면 그만이야 씨발아', '홍○리한테도 고소당하게 생겼더라만 같이 손잡고 가서 여자에 둘한테 고소 당하면 어떨지 모르겠네', '그냥 너 고소하고 받을 돈으로 목걸이 사도 남으니까 용서해주려고 기회줄 때 용서구해 씨발년아', '어차피 내가 지금 너 증거 다 들고 가서 고소하고 나머지에들도 고소하라고 다같이 하자고 하면 너 목걸이는 무슨 그 이상 해온다고 난리칠걸?'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목걸이를 사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직접 고소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홍○리로 하여금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7. 28. 17: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41, 반클리프앤아펠 매장에서 2,29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동원 전자서명완료